

강원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2회 임시회(7.6.~7.1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2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9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1. 07. 15.)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허소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2)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미 의원	수정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박병구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명순 의원	수정가결
경제건설 위원회 (1)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2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07. 15.(목)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0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발의됐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허소영 의원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김경식 의원



박인균 의원



정수진 의원



허민영 의원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4),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하민영 의원

■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유지 ·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지원,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지원, 노인 · 장애인 의치보철(義齒補綴) 지원, 임산부 · 아동 치아치료 지원 및 구강관리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윤미 의원



권순성 의원



윤지영 의원



정수진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 공동발의 :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현재 농촌 고령화에 따라 영농 기초 작업에 제한이 있는 고령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바,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금석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대표발의 :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양),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강원도민과 시장·군수는 농어업유산 설명서 및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강원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업유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박병구 의원



김정중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섭 의원



조성호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지원시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생산품 판로 지원,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영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군수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심의 후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지영 의원



박효동 의원



김진석 의원



박윤미 의원



신명순 의원



윤석훈 의원



위호진 의원



한금석 의원

■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 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관련 시설 개선비, 산업제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명순 의원



박효동 의원



김경식 의원



윤지영 의원



위호진 의원



정수진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에 수목 및 잔디 · 초화류를 심는 등 단열성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및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 ·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시 · 군 소유 건축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등이 있으며 시 · 군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옥상녹화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건물주 및 관리자는 해당 조정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조성호 의원



정수진 의원



허민영 의원